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5가합515122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20331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5가합515122 판결

전문

원고A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선, 조민희

피고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호

변론 종결2015. 5. 6.

판결 선고2015. 6.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2,061,928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1,342,061,928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공사계약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가. 공사계약

원고의 전신인 D연구원은 도급인으로서 2011. 8. 12. 수급인인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원고가 D연구원의 공사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원고를 도급인으로 표시한다).

- 1) 공사명 : E 건설공사
- 2) 공사장소 : 제주시 F 전면 해상 1km 앞 수심 16m 지점
- 3) 공사기간 : 2011. 8. 18.부터 2012. 8. 17.까지(2013. 4. 18.까지로 변경)
- 4) 계약금액 : 7,222,224,250원(7,935,000,000원으로 변경)

나. 선급금 및 보증서

원고는 아래와 같이 C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발행한 선급금보증서를 제공받았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C의 요청으로 원고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서(보증금액 2,888,889,700원)을 발급하였다.

1차 선금	2011. 8. 말	2,166,000,000	2011. 8. 19.	2,317,324,000	2012. 10. 16.	
2차 선금	2012. 1. 13.	2,888,000,000	2012. 1. 6.	3,203,301,000	2012. 10. 16.	
2012. 10. 30.	1,785,750,801	2012. 12. 29.	추가보증			
2013. 6. 3.	1,803,052,801	2013. 6. 17.	추가보증			
2013. 6. 3.	42,137,000	2013. 6. 17.	추가보증			
합계	5,054,000,000					

원고가 C에 공사 기성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회	4,794,900,000	1,438,470,000
제2회	876,000,000	620,491,928
합계	5,670,900,000	2,058,961,928

라. 선금정산식(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마. 공사 타절

1) C은 연장된 공사기간인 2013. 4. 18.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3. 11. 6. 원고에게 기상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감리단의 타당성 검토 결과 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13. 11. 19. 피고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감리단의 타절정산을 거쳐 2014. 1. 28. 피고에게 '계약금액 7,222,224,250원, 공사금액 8,291,505,341원(물가상승분, 인허가조건 등에 의한 설계변경 등), 타절기성금액 6,864,109,650원, 선급금 5,054,000,000원, 1차 기성지급 1,438,470,000원, 2차 기성지급 620,491,928원, 금회 기성금액 1,193,209,650원'의 타절 내역 통보 공문(갑 제21호증의 2)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선금정산액(쟁점 1)

선금정산액	3,611,938,072원	3,914,376,320원
산식	$[= 5,054,000,000\text{원(선금금)} \times \{5,670,900,000\text{원(1, 2회 누적 기성액)} / 7,935,000,000\text{원(변경 공사금액)}\}]$	$[= 5,054,000,000\text{원(선금금)} \times \{4,794,900,000\text{원(1회 기성액)} / 7,222,224,250\text{원(변경 전 공사금액)} + 876,000,000\text{원(2회 기성액)} / 7,935,000,000\text{원(변경 공사금액)}\}]$
미정산 선금금	1,442,061,928원 [= 5,054,000,000원(선금금) - 3,611,938,072원(선금정산액)]	1,139,623,680원 [= 5,054,000,000원(선금금) - 3,914,376,320원(선금정산액)]
근거	선금정산식에서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의 의미를 누적 기성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은 당회 회차의 기성액으로 새겨야 한다.

나. 기성고 비율

[원고]

원고가 타절 후 투입한 긴급공사비와 잔여공사비를 고려한 기성고 비율 65.39%를 적용하면

기성공사대금은 5,421,467,205원으로서 원고가 C에 지급한 제1, 2회 기성공사비

5,670,9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선금정산액과 상계될 미지급 기성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원고가 타절 시점에서 잔여 기성금액을 1,193,209,650원으로 확인한 바 있고, 관련 소송에서 공사 기성률은 81.8%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타절 후 과도하게 지출한 후속공사비를 반영하여 기성고 비율을 65.39%로 계산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4. 판단

가. 쟁점 1(선금정산액)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계약금액이 도중에 증액된 경우에는 기존의 선금정산 시 기준이 된 기성률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이후의 정산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금정산식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 기성액으로 풀이하여 이에 따른 누적 기성률을 선금액에 적용하여 선금정산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금정산액은

원고의 계산방식에 의한 3,611,938,072원이다.

나. 쟁점 2(미지급 기성대금의 상계)

1) 관계 법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2)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3. 11. 29. 공사이행보증 청구에 따라 C의 의무를 이양받은 피고에게 동절기 중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이 중단한 이 사건 공사 중 케이슨 속채움 및 사설항로표지 점검공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12. 6. 긴급공사 진행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17. G 주식회사와 케이슨 모래투입 긴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0.경 준공정산금 52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 20. H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33,250,000원으로 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중도타절에 따른 잔여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고, 낙찰자가 된 I 주식회사와 2014. 4. 1. 공사기간 2014. 4. 15.부터 2014. 7. 15.까지, 계약금액 3,079,000,000원으로 하는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잔여공사는 기존 설계도서를 준용하여 이를 기초로 작성된 산출된 착공내역서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졌다.

3) 검토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긴급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완성에 필수적이었다고 보이고, 잔여공사비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본공사 외에 별도의 추가공사를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긴급공사비 및 잔여공사비는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로서 기성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절 내역 통보의 '타절기성금액'은 완성(기성) 부분의

공사비를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로서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와 함께 기성고 비율 산식에서 전체 공사비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타절 당시 기성고 비율은 65.39% [= 타절기성금액 6,864,109,650원 / {(타절기성금액 6,864,109,650원 + 긴급공사비 합계 554,750,000원 (= 521,500,000원 + 33,250,000원) + 잔여공사비 3,079,000,000원)}] 남짓으로 산정되고 이를 적용한 기성공사대금은 5,421,815,342원 (= 타절공사금액 8,291,505,341원 × 기성고 비율 65.39%)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5,670,900,000원 (= 선금정산액 3,611,938,072원 + 1회 기성지급액 1,438,470,000원 + 2회 기성지급액 620,491,928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미정산 선금잔액에서 상계될 미지급 기성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타절 내역 통보 시 지급할 기성금액을 1,193,209,650원 (= 타절기성금액 6,864,109,65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670,9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될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하는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기성대금 산정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완성 부분 공사비에서 기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하여 나온 금액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감리단이 공정률을 81.8%로 파악한 것도 같은 이유가 작용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기성금액의 타절 내역 통보나 감리단의 공정률 인정의 사실만으로 위의 판단과 달리 하기 힘들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금금보증계약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미정산 선금 잔액 1,442,061,928원 및 위 금원 중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청구한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확장한 금액인 1,342,061,9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5. 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현

판사이애정

판사장민하

별지